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종전의 “설치할 경우에는”
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5. 2. ~ 5. 21.)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사무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10항”으로, “설치할 경우에는”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이동지원센터) ① 군수는 <u>법 제16조제2항</u>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u>설치할 경우에는</u>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2조(이동지원센터) ① ----- <u>법 제16조제10항</u>----- ----- ----- -- <u>설치하여야 하며,</u>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연락처	(033) 330 - 2019